

CR 2008 - 04

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

2008. 12

CR 2008 - 04

CEO
Report

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
보험회사 대응과제

2008. 12

류건식 · 서성민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,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< 목 차 >

I . 검토배경	1
II .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	2
1. 제도도입 및 설계측면	2
2. 제도운용 및 검증측면	3
3. 제도확산 및 인프라측면	5
III .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	8
1.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	8
2.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	10
IV . SWOT 분석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	13
1. SWOT 분석	13
2. 보험회사 대응과제	14
V . 결론	16
참고문헌	18

I. 검토배경

-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수급권 보호 미흡 등 퇴직연금제도상의 제반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.
 - 선진국 사례에서 볼 때 미국 등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0%이상이 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큼.
- 이에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 및 수급권보호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(이하 퇴직급여 보장법) 개정안을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 - 이번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운용상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시장 및 금융권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.
-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퇴직연금 운용전략 모색이 요구됨.
 - 왜냐하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른 영향이 금융권별로 상이하고, 이에 기초한 금융권별 대응전략이 수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.
-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퇴직연금시장 및 금융권에의 제반영향, 그리고 SWOT 분석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Ⅱ.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

1. 제도 도입 및 설계측면

- 현행 법령은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도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 및 사용자가 퇴직연금 선택폭을 보다 넓히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.
- 이에 개인별 복수연금제도,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허용, 담보대출 활성화,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합리화를 추진

<표 1>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: 제도도입 및 설계

현황 및 문제점	개정안
- 근로자 개인은 복수선택이 불가능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실정에 맞는 퇴직급여제 운영에 한계	-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(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) 를 동시가입하도록 허용
-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「과반수노조,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(근로자대표)」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노사협의 절차 엄격	-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신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견청취만으로 가능
-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 독자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많은 비용부담존재	- 확정기여형에 한하여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다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·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장관승인을 얻어 표준규약, 표준계약서, 표준 상품라인업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형태의 확정기여형 제도 제공가능

- 이에 따라 개인별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 등의 혼합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쉽게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.
 - 호주 : 특별한 노사합의 절차없이 근로자가 퇴직연금플랜을 선택(동의)하면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
 - 미국·일본 : 사용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리후생제도로써 근로자 개별동의만 있는 경우 연금플랜 가입
- 또한 일본 등처럼 복수사용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개정안의 특징임
 - 일본 : 확정기여형에서는 연합형(기업그룹단위) 또는 종합형(자본 및 인적관계가 없는 여러개의 기업가입)이 일반적인 형태

2. 제도 운용 및 검증측면

- 현재는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 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 - 이에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,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(이직시 개인퇴직계좌 이전원칙), 확정급여형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.
- 개정안은 미국 및 호주 등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

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보다 진일보된 안이라 할 수 있음.

- 미국은 퇴직, 장애, 사망 등인 경우, 호주는 영구 및 일시적 장애 등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됨.
- 또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엄격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을 실시하여, 적립금 과부족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.

<표 2>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: 제도운용 및 검증

현황 및 문제점	개정안
-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	-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
- 평균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해 직장이동시 퇴직연금연속성을 강화할 필요	- 퇴직시급여를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(55세) 까지 노후재원을 보존 ·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예외인정
- DB형 제도의 재정건전성 기준만 제시되어 있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·확인하는 절차가 부재 - 적립금의 과·부족에 대한 처리근거 등이 불비하여 사외적립하는 본래 취지가 반감	-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,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에게 통지 · 사용자는 재정검증결과,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0%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규정 ·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%를 초과한 경우 장래 부담금과 상계할 있도록 하고, 150% 초과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(안 제15조 제4항)

3. 제도 확산 및 인프라 측면

-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,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 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설정을 추진함.

<표 3>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: 제도확산

현황 및 문제점	개정안
-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후 보장기능이 어려운 퇴직금을 기득권이 없는 신규사업장에까지 자동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등에 있어 문제 존재	-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 연금제도를 자동설정하도록 의무부여
- 10인미만 사업의 영세성, 잦은 직장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	- 개인퇴직계좌를 가장 단순하고 이동성이 높은 개인퇴직연금제도로 변경
- 자영업인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 미흡	- 개인퇴직연금에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퇴직급여 제도의 급여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

- 또한 개인 퇴직연금에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퇴직급여제도의 급여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

- 미국 :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각출에 대하여 연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부여(가입대상은 전국민 확대)

<표 4>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: 인프라

현황 및 문제점	개정안
- 현행 법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(모집업무)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써 퇴직연금사업만 수행	-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,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신설(교육,이수,등록 등). ·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업무범위, 준수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
-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사업 중단을 모색중이나 자발적 등록말소 규정이 없고 사업 중단시 가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 미흡	-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사업 중단 등의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·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(3년) 또는 등록말소(2년) 및 취소(2년)시에 재진입제한
- 근퇴법령에는 계약이전, 제도변경, 제도중단 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여 법해석상 안정성 등 저해	- 제도중단에 의해 가입자가 급여를 중간정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도중단의 경우에도 가입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규정 - 제도폐지시 부담금 미납분 납입, 잔여 재산 배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· 제도폐지로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기존 중간정산처리 대신에 개인퇴직연금으로 이전

- 특히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절차, 사용자의 제도 변경·폐지·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함.

Ⅲ.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

1.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

1) 신규 퇴직연금시장의 점진적 확대예상

- ☐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,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, 개인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부 허용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신규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
 - 즉 2011년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과 더불어 개정안에 따른 신규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전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보임.
- 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 대기업사업자보다 중소형 사업장, 자영업자의 개인퇴직연금 가입비중이 보다 증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서비스 능력이 중요시 될 것임.
 - 은행 및 증권 등은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 및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견고히 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임.

2)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

- 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

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폭이 증대되는 기대효과가 예상됨.

- 또한 복수사용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허용은 그동안 퇴직연금적용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영세한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.
 - 더불어 신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,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퇴직연금가입 선택폭은 증대됨.
- 따라서 가입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폭 증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능력을 제고하느냐의 여부가 향후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.

3) 퇴직연금제도로의 단기적 전환 가시화

- 퇴직연금 전환측면에서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의 강화, 퇴직시 급여의 개인퇴직계좌로의 이전 등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.
 -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기능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
 - 다만 연금세제의 확대조치 부재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퇴직연금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.
- 특히 평균근속기간이 짧은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 퇴직시 급여를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

는 경우, 단기적인 퇴직연금 전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
4) 퇴직연금 수급권 및 가입자 보호에의 기여

-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수급권보호장치가 마련되 있지 않지만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,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등은 제한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는 가져올 것임.
- 또한 적립비율과 관계없이 총 적립금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역시 어느 정도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.
-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마련, 계약이전 및 제도 변동 등과 관련된 규정의 보완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보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보임.

2.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

- 수급권보호, 수탁자책임, 자산운용규제 등 퇴직연금제도 운용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어서 퇴직연금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임.
- 다만 개정안에 그동안 지적되었던 퇴직연금제도상의 문제(중간정산제 허용 등)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임.

-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확정급여형보다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.
- 확정급여형 연금재정 검증 절차 마련 등은 근로자 수급권보호에는 기여하지만, 반면에 사용자의 운용부담으로도 작용될 것으로 보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선호도로 연결되는데 한계는 존재함.

<표 5>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금융권 영향(상대적 기준)

개정안 내용	보험	타금융권	
		은행	증권
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	◎	●	◎
근로자 대표동의절차 합리화	◎	◎	◎
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	○	●	◎
중간정산요건의 강화	◎	◎	◎
퇴직시 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이전허용	○	◎	◎
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	●	◎	○
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등	◎	◎	◎
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	◎	◎	◎
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	○	●	●
개인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부허용	◎	●	●
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	●	●	◎
퇴직연금사업중단에 따른 등록말소근거	◎	◎	◎
계약이전 및 변경관련 규정보완	◎	◎	◎

주: ○(낮은 긍정적 영향), ◎(보통 긍정적 영향), ●(높은 긍정적 영향)

- 특히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, 대체로 보험 및 증권사보다 은행에 개정안의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(<표 5>참조).
- 즉 은행에게는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, 복수사용자의 확

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,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임.

- 2006년 이후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를 보면 은행은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함.

□ 보험사는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등이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반면, 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 등은 타금융권에 비해 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.

- 따라서 보험사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내용 및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,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.

IV. SWOT 분석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

1. SWOT 분석

- 보험회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강점 및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되, 약점 및 위협은 지속적으로 보완·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응책마련이 요구됨(<표 6>참조).

<표 6> 보험회사의 SWOT 분석

강점(S)	약점(W)
- 확정급여형 재정검증과 관련된 연금관리 전문인력 우위 - 연금제도 설계 등 운용관리 부문의 경쟁력확보(연금제도설계 노하우 등) - 교육컨설팅, 서비스전략 등과 같은 운용관리업무부문에서의 우위	-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상대적 취약 - 다양한 수익성 있는 상품을 제시하는데 한계 존재(투자상품제공에의 한계) - 자산운용 부분의 전문성 미흡
기회(O)	위협(T)
- 전반적인 퇴직연금 시장 규모의 확대 ·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- 확정급여형 재정 검증 근거 마련 등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우위확보 - 근로자 및 기업의 상품선택폭 확대로 연금컨설팅 수요증대 예상 -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로 FC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-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안정성 선호	- 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,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확대, 개인형 퇴직금 부담 납부 허용 등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시장 활성화 가능성 존재 - 재무건전성 강화로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유인 감소 - 중간정산제 폐지, 계약이전, 제도변경 관련 규정보완 등으로 중소형사의 확정기여형 선호도 증대

- **보험회사의 강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** 연금계리인력의 전문성 강화, 퇴직연금제도 설계 능력의 향상,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 체제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- **보험회사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** 퇴직연금재정의 적정성 확인 검증 능력의 차별화,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상 마케팅 능력 강화,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안정적 운용 중요성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됨.
- **보험회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** 연금자산운용 능력의 부족,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취약, 수익성 제고 능력 한계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.
- **위험요인을 줄이는 차원에서** 중소형 기업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선호도 증대,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성향 감소, 은행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한 확정급여형 연금시장의 잠식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가 요구됨.

2. 보험회사 대응과제

-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국 퇴직연금시장을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험설계사(예: FC)를 적극 활용하고,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조직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함.
- 즉 보험설계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망고객(예: 중소기업 CEO)을 대상으로 가입권유를 유도하기 위한 **보험설계사중심의 전국**

퇴직연금 판매망 구축이 요구됨.

- 또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.

□ 둘째, 법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연금제도 설계와 다양한 시스템 체계(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복수퇴직연금 시스템 등)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.

- 특히 연합형 확정기여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도입 및 개발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□ 셋째, 확정기여형 중심의 법개정으로 인해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.

- 특히 확정급여형 재정 검증 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□ 이와 더불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확정기여형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인퇴직계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점 강화 전략이 요구됨.

- 이를 위해 기존의 확정급여형위주의 퇴직연금시장 강화전략 이외에 중소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진출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
V. 결 론

-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3년만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은 보험회사 등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- 신규 퇴직연금시장의 확대, 퇴직연금 선택폭의 증대, 퇴직연금 전환 가시화,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.
- 이러한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차원에서 다양한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될 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번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보험사보다 은행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구됨.
- 보험사의 경우 개정안의 강점 및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, 약점 및 위협은 지속적으로 보완·개선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.
- 특히 보험사는 설계사중심의 판매채널을 퇴직연금가입 등에 적극 활용하고,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관서비스체제 구축 등으로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또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복합시스템 개발·구

축, 그리고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연금제도 설계능력 제고가 중요시됨.

-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차원에서 연금자산 운용능력제고 뿐만 아니라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의 양성 등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.
-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내용은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수준과 차이가 존재하지만,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험사가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고 구사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.
 - 왜냐하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우위는 대체로 제도도입초기의 운용전략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임.

참고문헌

- 류건식·김동겸, 「퇴직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과제」, 보험연구원, IBR, 2008.3
- 류건식, 「퇴직연금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운용전략」, 제1회 보험산업심포지엄 발표자료, 보험연구원·파인낸셜뉴스, 2008.9.
- 노동부,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(안)」, 2005. 12.
- _____,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」, 2008.8.
- _____,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(안)」, 2008.8
- _____,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」, 2008.8.
- World Bank, “ Republic of Korea ;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”, Report No 20204-KO, May 10. 2000.
- _____, “Old-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-first Century: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”, 2005.5
- OECD, *Regulating Private Pension Schemes; Trends and Challenges*, OECD Private Pensions Series, 2002.
- _____, *Pension at a Glance :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ies*, 2007.

저자약력

류건식

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, 보험계리사
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(재무연구실장)
(E-mail : keon@kiri.co.kr)

서성민

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
보험연구원 연구원
(E-mail : hanlmin@kiri.or.kr)

CEO Report 2008-04

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

발 행 일	2008년 12월 일
발 행 인	나 동 민
발 행 처	보 험 연 구 원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 쇄 소	(주)유성사
	대표전화 2268 - 0676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
(☎368-4431)로 하여 주십시오.